

연말정산 체크리스트

2월에 토해 낼지 돌려받을지는 그 전 10개월에 거의 정해집니다. 달력 순서대로 표시하세요.

매달 · 원천징수

회사가 간이세액표로
세금을 미리 땡니다

1월 · 연말정산

간소화 자료로 1년 치 진짜
세금을 다시 계산

2~3월 · 정산

더 났으면 돌려받고, 덜
났으면 더 냅니다

5월 · 종합소득세

부업·프리랜서 소득이
있으면 직접 신고

1 올해 안에

지금 바로

- ☐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"**결정세액**"부터 확인했다 (0원이면 공제를 더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 없습니다)
- ☐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(군 복무 기간 제외)였다면 **중소기업 취업자 감면** 신청서를 냈는지 인사팀에 물었다
- ☐ 월세를 살면서 **전입신고**를 안 했다면 이번 달에 했다 (월세 세액공제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)
- ☐ 청약통장 은행에 **무주택 확인서**를 냈는지 앱에서 확인했다

2 9~10월

남은 석 달 계획

- ☐ 카드사 앱에서 누적 사용액이 **총급여의 25%**를 넘었는지 보고 남은 기간 결제 수단을 정했다 (넘었다면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)
- ☐ 안경 영수증, 기부 영수증처럼 **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증빙**을 모아 두었다
- ☐ 공제받으려고 안 써도 될 돈을 더 쓰지는 않기로 했다

3 1월

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

- ☐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봤다 (학자금 대출 상환액 납입증명 등)
- ☐ 월세 세액공제용으로 **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**을 준비했다
- ☐ 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**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**을 새 회사에 냈다

4 2월~5월

결과를 받은 뒤

- ☐ 더 내라고 나왔고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에 **2~4월 분납**을 요청했다
- ☐ 3.3%를 떼인 프리랜서·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**종합소득세** 신고를 달력에 적었다
- ☐ 퇴사 뒤 연말까지 재취업을 안 했다면 5월에 월세·의료비 공제를 직접 넣어 신고했다

놓쳤다면

- ☐ 빠뜨린 공제·감면은 **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**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 (그해 낸 세금이 한도)

사회초년생이 자주 쓰는 공제, 숫자만

항목	2026년 10월 기준
중소기업 취업자 감면	만 15~34세(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제외),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%, 연 200만 원 한도
월세 세액공제	무주택 세대주·총급여 8천만 원 이하, 월세의 17%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) 또는 15%, 연 1,000만 원까지 인정
주택청약 소득공제	무주택 세대주·총급여 7천만 원 이하, 납입액의 40%, 연 300만 원까지 인정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	총급여 25%를 넘긴 부분부터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
보장성 보험료	연 100만 원까지 12%
의료비	총급여 3%를 넘긴 부분부터 15%

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는 일을 안 합니다

중소기업 감면 등으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, 연금저축이나 보험처럼 공제를 노린 상품에 돈을 더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.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부터 보세요.

내 숫자 적어 보기

작년 결정세액 _____ 원

총급여 × 25% = 카드 공제 문턱 _____ 원

총급여 × 3% = 의료비 공제 문턱 _____ 원

1년 치 월세 × 17%(또는 15%) = 월세 세액공제 _____ 원

청약 납입액(최대 300만 원) × 40% = 청약 소득공제 _____ 원

원천징수 비율(80·100·120%)은 고를 수 있지만 1년 총액은 같습니다. 2월에 목돈이 빠지는 게 싫다면 100%가 마음 편합니다.

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이며,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가족 관계·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내 경우가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)나 세무서 민원실에 물어보세요.

총급여 4,200만 원 도운의 세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한 예시, 감면이 들어갔을 때와 경정청구 예시는 『잃지 않는 연습』 2장에 있습니다.